

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)

제 목: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
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사 건 번 호		
피 의 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
이행기간		
보완수사요구 내용		
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		
비 고		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